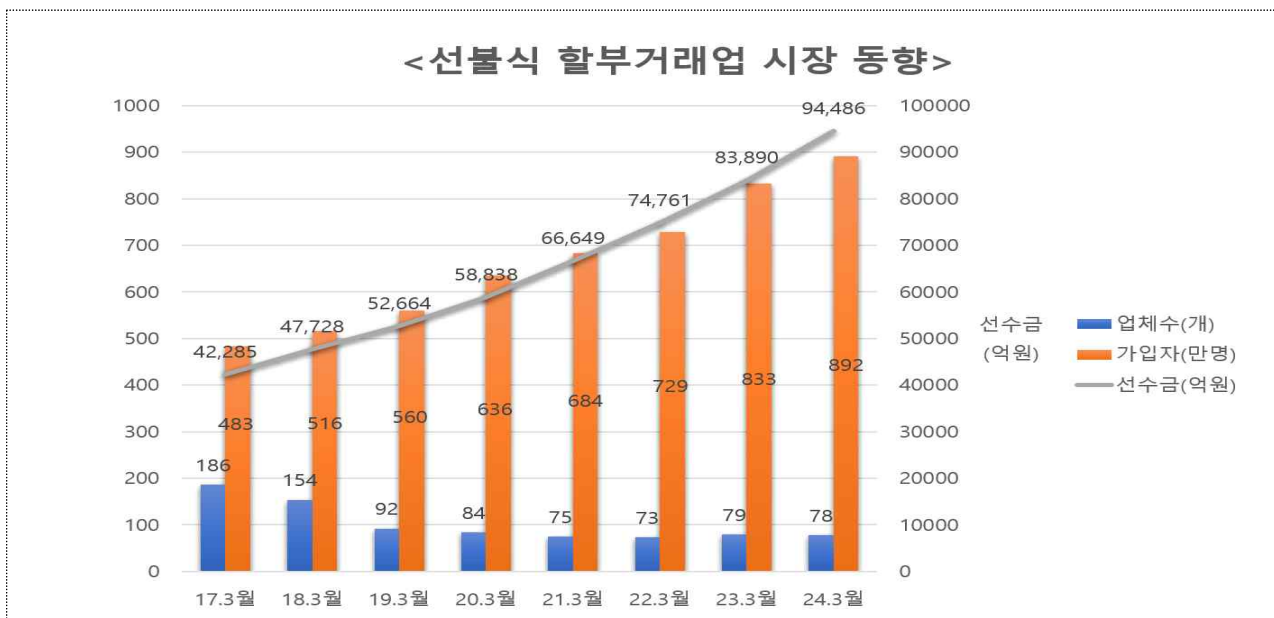


보도시점 2023. 6. 28.(금) 10:00 / 배포 2023. 6. 28.(금) 08:30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선수금 9조 원 넘어

- 2024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공개 -
- 가입자 수 892만 명, 선수금 9조 4,486억 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도(2024. 3. 31.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2022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대상이 된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이고, 그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

* 순복음라이프(주)를 포함한 수치로 2024. 4. 8. 등록 취소되어 자료 미제출함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59만 명이 증가한 892만 명이며 그 중 적립식 여행상품의 가입자 수는 28.5만 명(3.2%)이다. 또한, 선수금 규모는 1조 596억 원이 증가한 9조 4,486억 원이며 그 중 적립식 여행상품의 선수금 규모는 419억 원(0.4%)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 등을 받기 전에 오랜 기간 선수금을 납부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에게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1개 업체가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6개 업체는 평균 29.8%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1%(약 93억 원)를 차지한다.

* 2024년 3월 기준 상조상품은 50%, 여행상품은 30%를 보전해야 함

또한,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4건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이를 포함한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의 선수금 규모가 9조 원을 돌파하고 가입자 수도 9백만 명에 육박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에 힘쓰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더하여, 연내에는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들이 고인의 모든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붙임1> 2024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붙임2>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유의사항

담당 부서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편유림 (044-200-4430)
		담당자	조사관	박희웅 (044-200-4436)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I 개 요

1 추진 배경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18조 제5항~제6항 및 제36조에 근거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한다.
- 이를 통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가입할 때 시·도 등록 여부, 선수금 보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자 한다.
-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계의 동향 및 개별업체의 운영상황을 공개하여 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본 자료는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사업자 제출자료)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2 분석대상 및 공개방법

- 이번 정보공개는 '24년 3월 말 기준, 시·도에 등록된 78개 업체 중 자료를 제출한 77개 업체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 순복음라이프(주)는 2024. 4. 8. 등록 취소되어 자료 미제출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관련 주요 정보는 '11년 6월 공개한 이래 현재까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상시 공개 중이다.
- 공개 자료는 '24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일반현황과 선수금·보전금액 등 선수금 보전현황 등이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동향

- '24년 3월 말 기준 분석대상 77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892만 명, 총 선수금 규모는 9조 4,486억 원이다.
- '23년 대비 등록업체 수가 1개 감소하였으나, 가입자 수는 약 59만 명 증가하였고, 선수금 또한 총 1조 596억 원 증가하였다.

〈표1: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동향〉

(단위 : 개, 만 명, 억 원)

구 분	`20년 3월	`21년 3월	`22년 3월	`23년 3월	`24년 3월	`23년 대비 증감(%)
등록업체 수	84	75	73	79	78	△1(△1.3)
가입자 수	636	684	729	833	892	59(7.1)
선수금	58,838	66,649	74,761	83,890	94,486	10,596(12.6)

※ '24년 3월말 기준 등록업체 78개 중 자료를 제출한 77개 업체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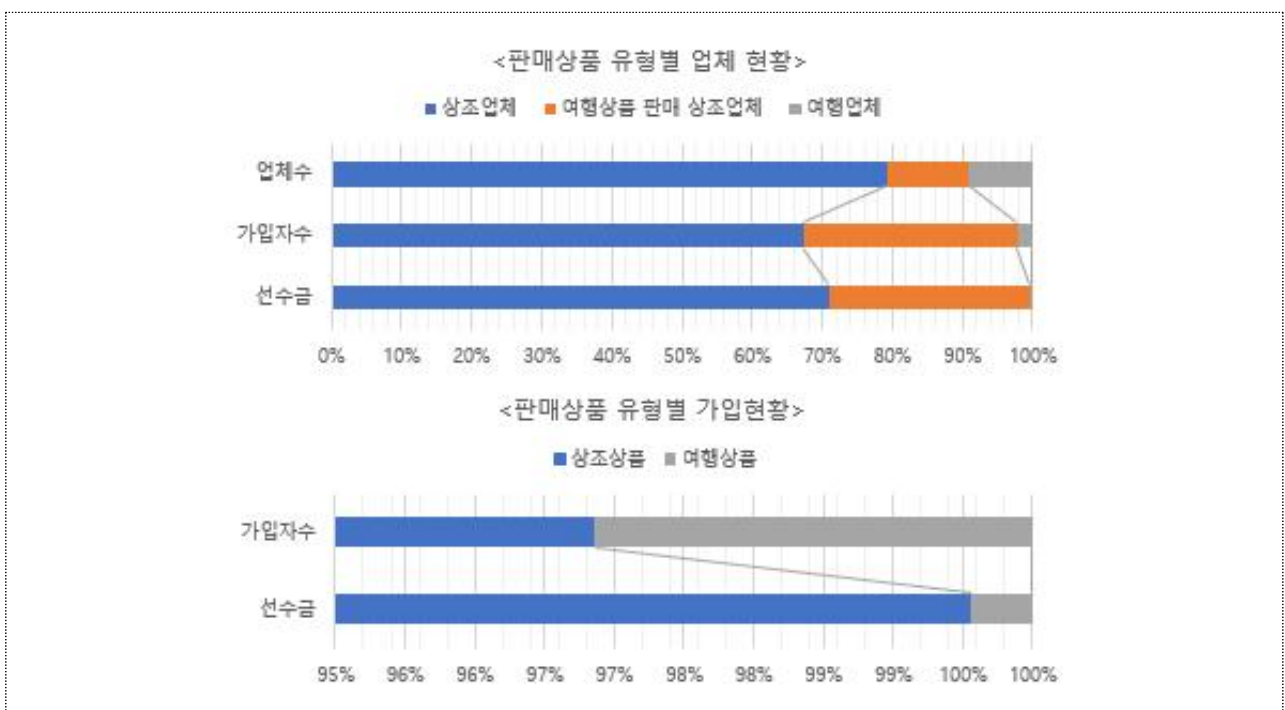
2 판매상품 유형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 판매 상품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선불식 상조상품의 가입자 수는 863.8만 명(전체 가입자의 96.8%)이고 선수금 규모는 9조 4,067억 원(전체 선수금의 99.6%)인 반면, 적립식 여행상품의 가입자 수는 28.5만 명(전체 가입자의 3.2%)이고 선수금 규모는 419억 원(전체 선수금의 0.4%)에 불과하다.
- **(순수 상조업체)** 선불식 상조상품만을 판매하는 업체는 61개 사이며, 가입자 수는 600.7만 명(전체 가입자의 67.3%), 선수금 규모는 6조 7,101억 원(전체 선수금의 71.0%)이다.

- **(여행상품 판매 상조업체)** 선불식 상조 상품과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9개 사이며, 가입자 수는 271.7만 명(전체 가입자의 30.5%), 선수금 규모는 2조 7,102억 원(전체 선수금의 28.7%)이다.
- **(순수 여행업체)** 적립식 여행상품만을 판매하는 업체는 7개 사이며, 가입자 수는 19.9만 명(전체 가입자의 2.2%), 선수금 규모는 283억 원(전체 선수금의 0.3%)이다.

<표2: 판매상품 유형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구 분	상조업체	여행상품 판매 상조업체		여행업체	전체
		상조상품	여행상품		
업체수(개) (%)	61 (79.2)	9 (11.7)		7 (9.1)	77 (100.0)
가입자수(만 명) (%)	601 (67.3)	263 (29.5)	9 (1.0)	20 (2.2)	892 (100.0)
		272 (30.5)			
	864 (96.8)		28 (3.2)		
선수금(억 원) (%)	67,101 (71.0)	26,966 (28.6)	136 (0.1)	283 (0.3)	94,486 (100.0)
		27,102 (28.7)			
	94,067 (99.6)		419 (0.4)		



3 지역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와 가입자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업체 분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개(67.5%)이며, 영남권(대구, 부산, 경상도)에는 15개(19.5%) 업체가 있다.
- '23년 대비 각 지역별 상조업체의 비중은 변동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 **(지역별 가입자 분포)** 수도권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가입자 수는 699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8.3%를 차지하고 있다.
- 수도권 업체 가입자 수가 전체 78.3%를 차지한 반면, 강원·제주권은 14.1%, 영남권은 6.5%, 광주·전라권은 0.9%, 대전·충청권은 0.2%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지역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단위 : 개, 만 명)

지역별		수도권	영남권	대전 충청	광주 전라	강원 제주	계
업체수 (%)	'23. 3월	50 (63.3)	17 (21.5)	4 (5.1)	5 (6.3)	3 (3.8)	79 (100.0)
	'24. 3월	52 (67.5)	15 (19.5)	4 (5.2)	3 (3.9)	3 (3.9)	77 (100.0)
가입자수 (%)	'23. 3월	615.3 (73.8)	56.0 (6.7)	2.1 (0.3)	8.5 (1.0)	151.5 (18.2)	833.4 (100.0)
	'24. 3월	698.8 (78.3)	57.5 (6.5)	2.0 (0.2)	8.3 (0.9)	125.7 (14.1)	892.3 (100.0)

4 가입자 수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 **(가입자 집중현황)** 가입자 현황을 보면 대규모 상위 업체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

- 가입자 수 10만 명 이상인 업체 수는 16개로 전체 업체 수의 20.7%를 차지하며,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787만 명(업체당 평균 약 49.2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8.1%를 차지한다.
- 가입자 수 1천 명 미만인 업체 수는 11개로, 전체 업체 수의 14.3%를 차지하나,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약 3천 명(업체당 평균 약 273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1%에 불과하다.

□ **(선수금 집중현황)** 가입자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역시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16개 업체의 선수금은 약 8조 2,782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87.5%에 달한다.
- 반면, 가입자 수가 1천 명 미만인 11개 업체의 선수금은 약 28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1%에 해당한다.

〈표4: 가입자 수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단위 : 개, 천 명, 억 원)

구 분	1천 명 미만	1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	1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	10만 명 이상	계
업체 수 (%)	11 (14.3)	20 (26.0)	30 (39.0)	16 (20.7)	77 (100.0)
가입자 수 (%)	3 (0.1)	83 (0.9)	971 (10.9)	7,866 (88.1)	8,923 (100.0)
선수금 (%)	28 (0.1)	826 (0.9)	10,850 (11.5)	82,782 (87.5)	94,486 (100.0)

5 선수금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 **(선수금 분포)** 총 선수금은 9조 4,486억 원으로 '23년 대비 1조 596억 원 증가(12.6%)하였으며, 선수금 대부분이 대형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선수금이 1,0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14개 사이며 해당 업체들의 총 선수금(8조 2,138억 원)은 전체 선수금의 86.9%에 달하고, 1개 업체당 평균 선수금은 5,867억 원이다.
-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업체(20개)의 총 선수금은 72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1%를 차지한다.

〈표5: 선수금 구간별 업체당 선수금〉

(단위 : 개, 억 원)

구 분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1,000억 원 이상	계
업체수 (%)	20 (26.0)	6 (7.8)	5 (6.5)	32 (41.5)	14 (18.2)	77 (100.0)
선수금 (%)	72.3 (0.1)	125.1 (0.1)	383.8 (0.4)	11,767 (12.5)	82,138 (86.9)	94,486 (100.0)
1개 업체당 평균 선수금	3.6	20.8	76.8	367.7	5,867.0	1,227.1

- **(선수금 집중 추세)** 선수금 규모에 따른 업체 간 격차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선수금 1,0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수는 '23년과 같은 14개 사이고, 이 업체들의 총 선수금은 8조 2,138억 원으로, 작년 대비 1조 142억 원 증가하였다.

〈표6: 선수금 1,000억 원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21년 3월	'22년 3월	'23년 3월	'24년 3월
선수금 1,000억 원 이상 업체 수(증감)	14	13 (△1)	14 (1)	14 (-)
선수금 1,000억 원 이상 업체 총 선수금(증감)	52,777	61,399 (8,622)	71,996 (10,597)	82,138 (10,142)

-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23년보다 2개 감소한 20개 사이며, 이 업체들의 총 선수금은 72억 원으로, 작년 대비 12억 원 감소하였다.

〈표7: 선수금 10억 원 미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21년 3월	'22년 3월	'23년 3월	'24년 3월
선수금 10억 원 미만 업체 수(증감)	15	15 (-)	22 (7)	20 (△2)
선수금 10억 원 미만 업체 총 선수금(증감)	77	79 (2)	84 (5)	72 (△12)

- **(가입자 분포)** 가입자 수는 1,0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외 구간은 모두 소폭 변동에 그쳤다.
 - 선수금 1,0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의 가입자 수는 753.9만 명으로 '23년 대비 34.2만 명 증가하였다.
 - 선수금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118.5만 명으로 '23년 대비 18.1만 명 증가한 반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4만 명 감소하였고,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도 1.7천 명 소폭 증가하였다.
 - 선수금 10억 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23년 대비 10.6만 명 증가하였다.

〈표8: 선수금 구간별 가입자 수〉

(단위 : 만 명)

구 분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1,000억 원 이상	계
‘21년 3월	1.78	1.58	5.23	104.5	571.0	684.1
‘22년 3월	1.45	1.92	5.38	104.4	616.0	729.1
‘23년 3월	3.29	1.54	8.36	100.4	719.7	833.4
‘24년 3월	13.91	1.71	4.29	118.5	753.9	892.3
‘23년 3월 대비 증감	10.62	0.17	△4.07	18.1	34.2	58.9

III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선수금 보전 현황

1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폐업·부도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총 선수금 9조 4,486억 원의 51.4%인 4조 8,532억 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 (여행상품은 24년 3월 기준 30%)를 보전해야 함.

- 판매상품 유형별로는 상조상품의 경우 선수금 9조 4,067억 원의 51.4%인 4조 8,396억 원을 보전하고 있고, 여행상품의 경우 선수금 419억 원의 32.4%인 136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공제계약)**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3개 사로 총 선수금(3조 1,586억 원)의 50.0%인 1조 5,788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 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 선수금을 법정 보전 비율만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임.

- 전체 상조 가입자의 31.3%(279.7만 명)가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받고 있다.

○ **(은행 예치계약)** 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4개 사로 총 선수금(4,108억 원)의 49.2%인 2,020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은행 예치계약을 맺은 업체 수는 전체 사업자의 44%를 차지함에도 전체 가입자 대비 4.7%(약 41.6만 명)에 불과하나, 이는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한 4개 사의 은행 예치계약 가입자 수가 제외된 수치임을 감안해야 한다.

○ **(은행 지급보증)**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6개 사로 총 선수금(9,131억 원)의 51.9%인 4,743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지급보증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을 보증한 은행 등이 해당 업체 선수금을 법정 보전비율만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임.

○ **(복수 체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4개 사로 총 선수금(4조 9,661억 원)의 52.3%인 2조 5,981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해당 업체들 중 2개 사는 은행 예치와 은행 지급보증을 병행하고 있고, 2개 사는 공제조합 가입과 은행 예치 또는 지급보증을 병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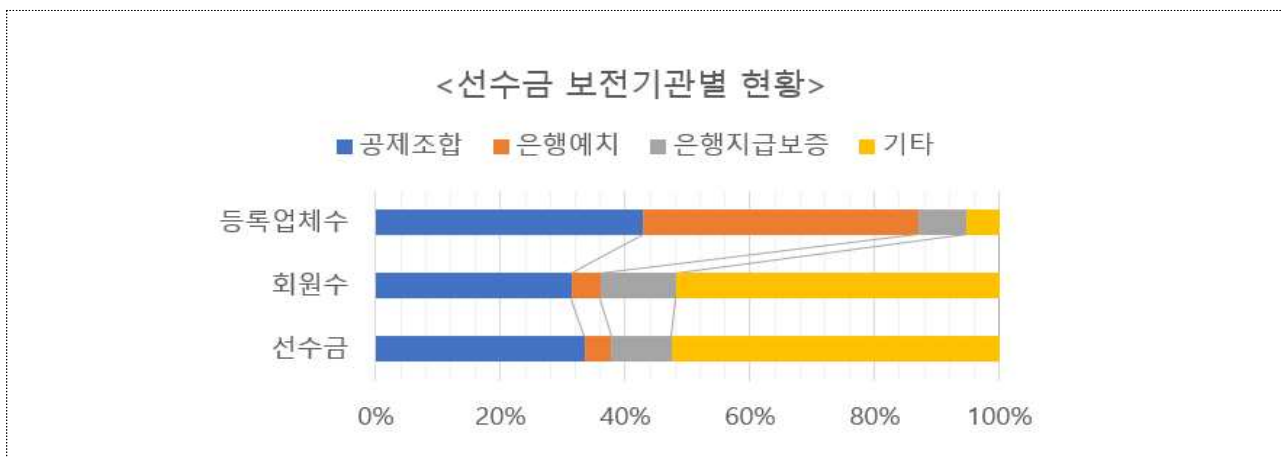
〈표9: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단위 : 개, 만 명, 억 원)

구 분	공제조합 가입	은행 예치	은행 지급보증	기타*	전체
업체수 (%)	33 (42.9)	34 (44.2)	6 (7.8)	4 (5.2)	77 (100.0)
회원수 (%)	279.7 (31.3)	41.6 (4.7)	108.1 (12.1)	462.9 (51.9)	892.3 (100.0)
선수금 (%)	31,586 (33.4)	4,108 (4.3)	9,131 (9.7)	49,661 (52.6)	94,486 (100.0)
보전금액**	15,788	2,020	4,743	25,981	48,532
보전비율	50.0%	49.2%	51.9%	52.3%	51.3%

* 2개 이상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기타’로 분류하였음.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 등이 되는 경우, 보전기관으로부터 소비자가 실제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표10: 판매상품 유형별 현황〉

(단위 : 만 명, 억 원)

구 분	상조상품	여행상품	전체
회원수 (%)	863.8 (96.8)	28.5 (3.2)	892.3 (100.0)
선수금 (%)	94,067 (99.6)	419 (0.4)	94,486 (100.0)
보전금액**	48,396	136	48,532
보전비율	51.4%	32.4%	51.4%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 등이 되는 경우, 보전기관으로부터 소비자가 실제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2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

□ 77개 업체 중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에 미달한 업체는 6개 사이며, 그 선수금의 합계는 93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 수준이고, 가입자 수는 1.6만 명(전체 가입자의 0.18%)이다.

○ 미달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29.8%(보전금액 약 28억 원)로 법정 보전비율*에 15.2%(금액기준 약 14억 원)가 부족하다.

* 법정 보전비율 30%인 여행상품이 포함되어 총 45.0%를 보전하여야 함.

〈표11: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법정 보전비율 이상	법정 보전비율 미만	전체
업체수 (%)	71 (92.2)	6 (7.8)	77 (100.0)
선수금 (%)	94,393 (99.9)	93 (0.1)	94,486 (100.0)
보전 금액	48,504	28	48,532
보전비율	51.4%	29.8%	51.4%

IV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

□ '23년 4월부터 '24년 3월까지 공정위로부터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업체의 위반 유형, 적용 법 조항, 조치 유형, 조치 일자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 **(행위 유형 기준)** 해당 기간 중 공정위는 시정조치 불이행 1건, 금지행위 관련 위반 2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위반 행위 1건 등 총 4건의 위반 행위에 따른 조치를 하였다.

〈표12: 위반 유형 및 조치 유형에 따른 위반 건수〉

(단위: 건)

구분*	경고	시정명령	고발	과태료	합계
시정조치 불이행	-	-	1	-	1
금지행위 관련 위반	1	1	-	-	2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위반	-	-	-	1	1
합 계	1	1	1	1	4

*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대표 조치 유형을 기준으로 표기함

V 평가

-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현황 등 주요 정보 공개는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거래 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 등록업체 수는 작년보다 1개 감소하였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1조 596억 원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59만 명이 증가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하여 향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소비자는 가입하려고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관할 자치단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개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재무정보 및 선수금 보전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상조: 50%, 여행: 30%)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부도·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 자신이 가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확인하고 부도·폐업 등 발생 시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통지받을 필요가 있다.

※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 관련 확인사항

- 공정위 누리집*에서 가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은행명, 연락처 등)을 확인
-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상에서 납입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가능하며, 은행에치 또는 지급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
- *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검색으로 피해보상금 지급기관명 및 연락처 검색 가능
- **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 > 납입내역 조회
상조보증공제조합(www.ksmac.or.kr) > 납입내역 조회

- 평소 계약서, 피해보상증서 등 피해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챙겨두어 예기치 못한 부도·폐업에 대비해야 한다.

◇ 계약서 및 약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가입한 회사가 흡수합병 되는 경우, 합병사항에 대한 업체의 공고*를 확인하고, 합병 후 본인의 계약사항이 잘 이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합병하는 경우, 할부거래법 제22조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합병에 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함.

- 계약해지 시 환급금, 서비스 제공 내용 중 추가요금 유무와 관(棺), 수의(壽衣) 등 장례용품의 품질 확인이 필요하다.
-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판매사원 등 모집인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

◇ 대금환급, 위약금, 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불만사항 발생 시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상조상품과 일반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회원권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결합상품 구매 시 상품별 판매대금을 확인하고 상조 서비스 계약서와 별도로 일반상품에 대한 계약서를 구분해서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 계약서상 회차별 상조상품과 일반상품 각각의 납입 대금, 해약 환급금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특히, 해당 상품의 중도 해지 시 납입한 금액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일반 상품의 잔여 대금은 해약 후에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만기 시 100% 돌려준다’ 고 광고하는 상조상품 중에는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인 만기에서 상당기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상당수 소비자들이 상품 가입시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만기 후 일정 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가입 상품이 선수금 보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장례, 혼례, 여행 및 가정의례를 위한 용역 제공과 관련된 대금을 받는 계약을 말한다.
 - 다만, 선수금의 50%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조 상품과 달리, 여행 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상품 가입 시 적용되는 보전비율*의 확인이 필요하다.

* △시행일(2022. 2. 3.)부터 1년까지 : 10%, △1~2년 : 20%, △2~3년 : 30%, △3~4년 : 40%, △4년 경과 후 : 50%

- 따라서 즐기세포 보관, 어학연수 등을 위한 대금 납부 및 결합 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회원권 등)은 선수금 보전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만기 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자신이 가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영업 상태 및 선수금 보전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폐업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